

수원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14089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1408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합1017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군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원

담당변호사 장원, 송원

변론종결 2021. 12. 9.

판결선고 2022. 1. 2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합10175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4. 9. 22. 접수 제20874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4. 9. 22. 접수 제20874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7. 4. 2. 접수 제1168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7. 4. 2. 접수 제1168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본안사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의 가항(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C 주식회사 사우주택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과 E회사 사우직장주택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은 1990.경부터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군포시 G 외 20필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H는 D조합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조합의 조합장이었다(이 사건 사업 위치는 1991. 10. 24.경 ‘군포시 U 외 20필지’로 변경되었다).”

○ 제1의 라항(제1심판결 제3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각 지분(1/2)에 관하여는 2019. 7. 18. ‘2019.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명의의 각 지분(1/2)에 관하여는 2019. 12. 3. ‘2019.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D조합의 조합장이었던 H와 F조합의 조합장이었던 망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위 각 조합에 부과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및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나) 피고는 D조합 및 F조합의 개발부담금 체납을 이유로 조합장들인 H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피고의 개발부담금 징수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다.

2) 피고

가)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D조합 및 F조합에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뿐, 이를 H나 망인 개인에게 부과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조합 및 F조합이 H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실질적으로 위 각 조합의 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등기로 인하여 피고의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먼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된다(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12조 제1항).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 1841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위 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다만,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로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및 이에 따른 법률관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 8. 망인 및 H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기초사실,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조합과 F조합이 1993. 1. 8. 이전에 H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았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1993. 1.경 D조합과 F조합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H와 마인이 개발부담금이 조합원 전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임을 전제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② 망인은 2016.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해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8호증의 1)을 보냈는데, 위 서한에는 ‘1993.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신탁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표인 H, 망인 명의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신축된 상가건물인데, H와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였던 D조합 및 F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이를 승계취득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처럼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H와 망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D조합과 F조합은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 이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초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H와 망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소유권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이 2019.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2.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망인과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터 잡아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1)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의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인 망인의 포괄승계인으로서 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망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인 이상,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원고들의 각 지분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의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H 명의의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H 명의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인 H로부터 그가 소유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로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상속인인 망인 명의의 지분은 물론 H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도 제3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과 H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명의수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살펴본, H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의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린다거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H 명의의 지분에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들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이전등기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이 상속받은 각 1/2 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이 매수한 각 1/2 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H가 아니라 D조합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H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93. 1.경 D조합과 F조합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H와 망인이 개발부담금이 조합원 전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임을 전제로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1993. 3.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터잡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과액을 173,644,300원으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개발부담금 부과서(을 제5호증의 4)는 ‘D조합장 H’, ‘F조합장 망인’을 수신처로 하여 작성되었고, 첨부된 납부고지서에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적용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서 주택단지조성사업 등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사업시행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부과처분의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D조합과 F조합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있다.

② H와 망인은 1993. 8. 31.과 1993. 12. 30.경 D조합 및 F조합 명의로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D조합은 1997. 11. 25.경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③ H와 망인은 피고에게 위 개발부담금 일부를 2회에 걸쳐 납부하였는데, 각 납부 영수증(을 제6호증의 1, 2)에는 납부자에 관하여 ‘D조합 H 외 1인’, ‘D조합장(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및 각 압류등기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등 참조). 또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도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압류처분 및 제1압류등기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D조합과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H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1994. 9. 22.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H와 D조합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였고, 이에 위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대내적으로 D조합이 보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H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며, H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유효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명의신탁자인 D조합이 부담하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위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압류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H 명의 지분을 명의신탁자인 D조합의 재산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비록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2압류처분 및 제2압류등기에 대한 판단

(1) 갑 제6,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 1997. 4. 2.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H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H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각 1/2 지분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인 D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H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2압류처분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도 개발부담금을 환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이상 이 사건 제2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것은 H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H 명의의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그 권리를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 취소되거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터 잡아 마쳐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따라 H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압류등기를 마쳐 놓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제2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들이 H로부터 매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1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 2, 3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러한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 그렇게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등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조합에 대하여 1993. 9. 4.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2. 이 사건 제2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다음 날인 1993. 9. 5.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4. 2.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대한 이 사건 제2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로써 피고의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소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도영오, 판사 정성화

별지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부분(각1/2 지분)에 한하여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범위에 한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